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

PROSECUTION SERVICE

대구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우남준

전화 053-740-4352 / 팩스 0502-193-5504

보도자료

2022. 1. 5.(수)

제목

국가보조금 부정수급한 D인권센터 前 대표 불구속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
-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1부(부장검사 유도윤)는 '18. 6.경부터 '19. 12.경까지 근무하지 않은 상담소장, 상담원을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'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신규 국비지원' 관련 보조금 약 5억 5천만원을 부정수급하고, 민간단체 지원금 약 1억 4천만원을 용도 외 사용한 D인권센터 前 대표와 前 상담소장을 불구속 기소하였음
- 향후에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보조금 비리 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정 대처하겠음

I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● 피고인

- A○○(54세, D인권센터 前 대표)
- B○○(37세, D인권센터 前 상담소장)

● 주요 공소사실 요지

△ 2021. 2. 24. 불구속 기소 사건

- ① A○○은 '15. 3.경~'19. 7.경 실제 자원봉사자가 한국어 강의를 할 것임에도 자격을 갖춘 한국어 강사가 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약 1억 7천만원의 여성가족부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편취 [사기,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]

△ 2021. 12. 31. 불구속 기소 사건

- ② A○○, B○○은 공모하여, '18. 6.경~'19. 4.경 근무하지 않은 C○○이 위 센터에 재직하고 있는 상담원인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약 1억 3천만원의 여성가족부 및 대구광역시의 국가보조금, 지방보조금을 편취 [사기,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, 지방재정법위반]

※ 위 보조금은 상담소 운영비(국가보조금 50%,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50%)와 종사자 수당(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00%)으로 구성

- ③ A○○은 '19. 3.경 위 센터 상담소장이 공석임에도 상담소장이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약 2억 5천만원의 여성가족부 및 대구광역시의 국가보조금, 지방보조금을 편취 [사기,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, 지방재정법위반]

- ④ A○○은 '14. 12.경~'19. 9.경 E공동모금회 등 7개 민간단체로부터 '여성 폭력 피해자의 사회·경제적 자립 및 폭력예방 인식개선 지원사업' 등으로 지원받은 사업비 약 1억 4천만원을 해당 사업 아닌 위 센터 일반 운영비로 임의사용 [업무상횡령 등]

II

수사 경과 및 재판 경과

- 2021. 2. 24. 피고인 A○○ ① 사안으로 불구속 기소
※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
- 2021. 7. 21. 대구광역시경찰청, 사건 송치
- 2021. 12. 31. 피고인들 ②, ③, ④ 불구속 기소

III

참고사항

-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소 신규 국비지원기관 선정 계획에 따르면, 위 센터 부설기관인 상담소에는 자격을 갖춘 상담원이 1명 부족하여 국비지원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, 피고인들은 근무하지 않은 C○○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보조금 1억 3천만원을 부정수급하였음

- 한편 피고인 A○○은 상담소장이 공석으로 국비지원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퇴사한 B○○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보조금 약 2억 5천만원을 부정수급하기도 하였음
- 피고인 A○○은 E공동모금회 등 민간단체로부터 ‘여성폭력 피해자의 사회·경제적 자립 및 폭력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지원사업’ 등의 사업비로 지급 받은 4억원 중 약 1억 4천만원을 해당 사업이 아닌 위 센터 일반 운영비 등으로 용도 외 사용하였음 ☒